

성평등 관련 국제규범입법동향 및 지원체계에 관한 법제분석

박언경(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서론

인간이 누려한 기본적 자유이자 보편적 권리에 해당하는 평등권의 한 유형인 '성(性)에 의한 차별 금지'는 국제사회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특별한 노력을 다하고 있는 분야이다. 국제인권법의 보호대상인 모든 인간에는 당연히 여성이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에 대한 차별적 관행과 심각한 권리침해가 존재하고 있다. UN 헌장과 세계인권선언, 그리고 국제인권법 분야의 조약과 국제기구 결의 및 선언들은 '성(性)에 의한 차별금지'를 기본 이념 및 목표로 선언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구성원인 주권국가들은 이를 구현하기 위한 이행 및 감시체제를 구축·강화하고 있다. 국제규범은 국제법의 영역인 국제사회에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유일한 규범이며, 개별국가는 국내법을 이유로 국제법의 불이행을 정당화 할 수 없다는 점에서 국제규범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2. 성평등권의 보호를 위한 국제규법의 체계

'성(性)에 의한 차별금지'를 위하여 국제사회는 다양한 국제규법들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성평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국제사회의 모든 국가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보편적 규법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보편적 규범이 가지고 있는 한계인 강력한 이행체제의 부재(不在)를 보완하기 위하여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지역적 규법의 방식으로 보다 구체화·명료화·강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보편적 국제규법으로는 국제사회 기본질서에 해당하며 인권문제의 국제화를 선언한 UN 헌장, 국제인권분야에서 관습국제법의 지위가 인정된 세계인권선언, 세계인권선언의 일반원칙을 규범화하여 국제인권분야의 기본조약의 지위를 가지는 국제인권조약(A규약, B규약), 여성의 평등권을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여성차별철폐협약이 대표적인 규범이다. 반면 지역적 차원에서 인권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협약으로는 1950년 유럽인권협약, 1967년 미주인권협약, 1981년 아프리카 인권협약 등이 있다. 이들 규범들은 국제사회의 목적과 개별국가의 의무로 '성(性)에 의한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법안에서의 평등, 혼인에서의 성평등, 노동에서의 동등보수 및 동등근로조건, 기구 내에서의 여성활동의 보장 등을 내용으로 한다.

전통적인 법원인 조약에 의한 방식 이외에도, 국제기구는 다양한 결의의 채택을 통해 성평등의 실현을 노력하고 있다.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UN 안전보장이사회는 "여성, 평화, 안보(Women and Peace and Security)"를 주제로 하는 결의안을 지속적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UN 총회를 비롯한 기타 국제기구에서 개최하는 국제회의에서 채택되는 선언 및 결의안 들은 UN 헌장, 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조약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으며, '성(性)에 의한 차별금지'를 위한 새로운 쟁점인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성적지향(sexual

orientation), 성별정체성(gender identity) 및 양성평등(gender equal) 등에 대한 이슈화와 함께 UN이 여성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된다.

3. 성평등권의 보호를 위한 이행 및 감시체제

성평등권의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이행 및 감시체제는 UN 헌장기구에 의한 이행 및 감시체제와 국제인권협약 기구에 의한 이행 및 감시체제로 작동되고 있다. 성평등권 보호를 담당하는 주요 UN 헌장기구는 UN 안전보장이사회, UN 총회 및 인권이사회, 인권최고대표, UN 여성기구, UN 여성지위위원회 등이다. 성평등권 보호를 담당하는 주요 보편적 인권협약기구는 B규약 위원회, A규약 위원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있으며, 지역적 인권협약 기구로는 유럽인권재판소, 미주인권재판소 등이 있다.

UN 안전보장이사회는 무력충돌 및 무력충돌 이후의 평화유지 활동의 분야에만 제한되어 적용된다는 한계는 있지만 모든 UN 회원국을 구속한다는 점에서 강력한 이행체제로 평가된다. 기타 주요 UN 헌장기구와 국제인권협약 기구는 일반적으로 국가 보고제도, 국가간 통보제도, 개인통보제도 등을 도입하여 '성(性)에 의한 차별금지'를 실현하기 위한 이행체제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성평등권 보호를 이행체제는 개별국가의 자발적인 이행에 기초하는 보고제도에서 점차 개인통보제도의 도입이라는 형태로 확대되는 특징을 보이는데, 성평등권을 보호하는 국제규범이 해석론으로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의 사안에도 적용이 가능한 현 시점에서 개인통보제도가 가지는 의미는 크다고 할 것이다. 상설 사법재판소인 유럽인권재판소 및 미주인권재판소는 각각의 지역인권협약에 기초하여 운영되고 있는데, 법적구속력이 부여되는 판결을 통해 이행된다는 점에서 강력한 이행체제에 해당한다.

4. 시사점

성평등 관련 국제규범은 여성차별철폐협약과 같이 직접적으로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조약도 있으나, 상당수의 국제인권조약은 특정 조문에서 '성(性)에 의한 차별금지'의 이념 및 내용을 담고 있는 규정을 두어 성평등의 실현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반적으로 '성(性)에 의한 차별금지'는 여성에 대한 차별금지를 의미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까지도 동 범위에 포함되고 있다. 인권이사회 결정, 유럽인권재판소의 결정, UN 여성기구의 활동방향 등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확인된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흐름은 우리나라의 성평등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성평등권 보호와 관련한 주요 국제규범 및 행정체제의 특징으로 볼 때, 향후 국제사회는 UN 체제를 중심으로 연성법(soft law)의 성격을 가지는 국제기구의 결의 및 선언을 통해 성평등 및 성적지향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확립하는 노력과 함께 개별국가의 구체적 이행에 대한 의견 및 권고가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나아가 UN에 의한 권고의 이행이 불충분할 경우에는 국제사회의 감시와 함께, 개인통보제도에 의한 직접적인 권리구제의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성평등권의 보호에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에 대한 차별금지가 포함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한국의 입장이 국제사회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는 것과 함께 국내법과 관련 정책이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을 충분히 수용하고 있는 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며 나아가 새로운 입법 및 행정체제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